

보도시점 : 2024. 4. 24.(수) 11:00 이후(4. 25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4. 24.(수)

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,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

-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
...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콜센터(1600-9640)도 운영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4월 25일(목)부터 ‘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’(jeonse.kgeop.go.kr)(이하 지원관리시스템)을 운영한다.
 -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·공매 유예·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*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.
 - 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, 경·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
 -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'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.
-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, 긴급한 경·공매 유예 신청,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.
 -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,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, 경·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.
 -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,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.
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.
-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‘사용자 매뉴얼’을 제공하고,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(1600-9640)도 운영한다.

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정보마당 전세사기피해접수 알림마당 나의민원

HOME > 나의민원 > 피해자결정 신청현황

홍*동님 신청 및 진행현황

🔗 회원정보 수정

🔔 알림내역

피해자결정 신청

`24.04.11
신청

`24.04.12
피해사실조사
(30일)

위원회 상정
심의·의결(30일)

결정문 송달

긴급 경/공매 유예

`24.04.11
신청

`24.04.12
피해사실조사
(5일)

`24.04.17
위원회 상정
심의·의결(15일)

`24.04.18
경매기관 통보

<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>

- 이와 함께,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.
-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“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”면서,
 - 앞으로도 “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,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전세사기 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장원	(044-201-5232)
		담당자	주무관	이상호	(044-201-5239)
	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조사지원팀	책임자	팀 장	고종신	(044-201-5261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현	(044-201-5265)
			주무관	송현종	(044-201-526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